

주주총회소집공고

2012년 5월 25일

회 사 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
대 표 이 사 : 김 정 남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891-10
(전 화) 1588-0100
(홈페이지)<http://www.idongbu.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총무파트장 (성 명) 김 현 호
(전 화) 02-3011-3323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45기 정기)

1. 일 시 : 2012년 6월 13일(수) 오전 9시

2. 장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891-10 동부금융센터 지하2층 다목적홀

3. 회의의 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감사보고
- 영업보고
- 최대주주등과의 거래 보고

나. 결의사항

- 제1호 의안 : 제45기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승인
의 건

* 이익배당 예정내용 : 보통주 1주당 현금 1,200원

-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안) 승인의 건
- 제3호 의안 : 이사(사외이사 포함) 선임의 건
- 제4호 의안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제5호 의안 : 이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

4. 의결권행사 방법

증권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주권을 예탁하고 계신 실질주주께서는 의결권을 직접행사하거나 또는 불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뜻을 주주총회일의 5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첨부참조 요망)

※ 첨부 :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 안내문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방법 안내>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의결권은 주주총회에서 주주님의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는 고유한 권리이며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에 실질주주(증권회사 계좌를 통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께 아래와 같이 의결권 행사방법을 안내 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결권 행사의 일반적인 유형

<직접행사> 주주 본인이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행사함

<대리행사> 주주의 가족 등 제3의 대리인을 통하여 대리 행사함

□ 한국예탁결제원의 의결권 행사

실질주주께서 아래 <의사표시 통지서>에 의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의사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회사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14조 제5항에 의거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토록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을 제외한 참석주주의 의결권행사 결과 찬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Shadow Voting)하게 됩니다.

□ 의사표시 통지서 송부에 관한 부탁 말씀

실질주주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의 의결권행사 가능주식수 산정(아래 양식으로 보내주시는 의사표시 수량을 제외함)할 수 있도록 아래의 "의사표시 통지서"를 송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표시 통지서"는 반드시 송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의사표시 통지서"를 송부하지 않으시더라도 주주권 행사에 불이익이나 제약은 없습니다.

<송 부 처> 150-884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4-6 한국예탁결제원 "실질주주 의사표시 담당자 앞"

팩시밀리 : (02)3774-3244~5

<송부시한> 2012년 6월 7일 (※ 주주총회 5일 전)

양식 : 의사표시 통지서

실질주주의 의견권 행사방법 안내

주지하시는지 바와 같이 의견권은 주주총회에서 주주님의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는 고유한 권리이며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에 실질주주(증권회사 계좌를 통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께 아래와 같이 의견권 행사방법을 안내 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결권 행사의 일반적인 유형**

- <직접행사> 주주 본인이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행사함
- <대리행사> 주주의 가족 등 제3의 대리인을 통하여 대리 행사함

□ **한국예탁결제원의 의견권 행사**

실질주주께서 아래 <의사표시 통지서>에 의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의사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회사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14조 제5항에 의거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이 의견권을 행사하도록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을 제외한 참석주주의 의견권행사 결과 찬반 비율에 따라 의견권을 행사(Shadow Voting)하게 됩니다.

□ **의사표시 통지서 송부에 관한 부락 말씀**

실질주주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의 의견권행사 가능주식수 산정(아래 양식으로 보내주시는 의사표시 수량을 제외함)할 수 있도록 아래의 '의사표시 통지서'를 송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표시 통지서'는 반드시 송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의사표시 통지서'를 송부하지 않으셔도 주주권 행사에 불이익이나 제약은 없습니다.

<송 부 처> 150-884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4-6 한국예탁결제원 '실질주주 의사표시 담당자' 앞
 팩시밀리 : (02)3774-3244~5

<송부시한> 2012년 6월 7일(※ 주주총회 5일 전)

의사표시 통지서

한국예탁결제원 귀중

본인은 2012년 6월 13일 개최하는 동부화재에상보협(주)의 45기 주주총회 및 속회 또는 연회에 대하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본인 소유주식의 의견권행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의사표시를 합니다.

실질주주번호		의 사 표 시		
주민등록번호		직접행사	대리행사	불행사
의결권 주식수				

2012년 월 일

실질주주 성 명 (인)
 주 소

양식_의사표시통지서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사외이사 등의 성명			
			이근영 (출석률: 100%)	김선정 (출석률: 100%)	이수휴 (출석률: 100%)	엄홍렬 (출석률: 100%)
			찬 반 여부			
1	2011.4.28	제1호:제44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안) 승인의 건	찬성	찬성	-	찬성
		제2호:동부증권 후순위회사채 매입의 건	찬성	찬성	-	찬성
		제3호:내부통제규정 개정의 건	찬성	찬성	-	찬성
		<보고사항> (1) 동부하이텍 신디케이트드론 운영 등 주요 사항 보고	-	-	-	-
2	2011.5.20	제1호:제44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부의안건 확정건의 건	찬성	찬성	-	찬성
		제2호:은행 지급 보증장 연장건의 건	찬성	찬성	-	찬성
		제3호:동부월드의 골프회원권 매입의 건	찬성	찬성	-	찬성
		<보고사항> (1) 주요 추진사항 (2) 선임계리사 검증의견 보고 (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및 평가결과보고 (4) 내부통제시스템 평가보고서 제출 및 보고 (5) 감사실시 결과 보고 (6) 동부CN(주)와의 SLA 계약 갱신 보고	-	-	-	-
		제1호:이사회 의장 선임의 건(사외이사 선임)	찬성	찬성	찬성	-
		제2호: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
3	2011.6.10	제3호:제45기 이사보수 집행(안)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
		<보고사항> (1) 제44기 중 이사회 의결건에 대한 결과보고	-	-	-	-
4	2011.6.30	제1호:집행임원 선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
5	2011.8.10	제1호:김포 풍무2구역 도시개발사업 PF대출의 건	찬성	찬성	찬성	-
		제2호:동부캐피탈(주) CP할인 대출연장의 건	찬성	찬성	찬성	-
		제3호:US Branch 법률 공지 대리인 임명 위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
		제4호:동부CN와 대규모내부거래 승인 및 변경의 건	찬성	찬성	찬성	-
		<보고사항> (1) FY 11 1분기(누계) 경영실적 요약, 주요 추진사항 (2) 동부하이텍 신디케이트드론 운영 등 주요 사항 보고	-	-	-	-
6	2011.9.30	제1호:동부건설 BW(신주인수권부사채) 매입의 건	찬성	찬성	찬성	-
		제2호:UN Global Compact 가입의 건	찬성	찬성	찬성	-
		제3호:지점(사업단) 신설의 건	찬성	찬성	찬성	-
		제4호:동부CN와 대규모내부거래 승인 및 변경의 건	찬성	찬성	찬성	-
		<보고사항> (1) 제45기 이사 등 보수집행(안) 보고	-	-	-	-

회사	개최일자	의안내용	사외이사 등의 성명			
			이근영 (출석률: 100%)	김선정 (출석률: 100%)	이수휴 (출석률: 100%)	엄홍렬 (출석률: 100%)
			찬반여부			
7	2011.11.5	부의 안건 없음	-	-	-	-
		<보고사항> (1) FY 11.2분기(누계) 경영실적 요약, 주요 추진 및 계획사항	-	-	-	-
8	2011.12.23	제1호:동부생명 주식 매입의 건	찬성	찬성	찬성	-
		제2호:동부하이텍 신디케이트드론 운영 등 주요사항 변경의 건	찬성	찬성	찬성	-
		제3호:동부CN와 대규모내부거래 승인 및 변경의 건	찬성	찬성	찬성	-
		제4호:U.S. Branch 자본 증액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
9	2012.03.09	제1호:동부하이텍 신디케이트드론 운영 등 주요사항 변경의 건	찬성	찬성	찬성	-
		<보고사항> (1) FY 11 3분기(누계) 경영실적 요약, 주요 추진 및 계획사항	-	-	-	-
10	2012.03.30	제1호:FY2012 사업계획(안) 확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
		제2호:동부CN와 대규모내부거래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
		제3호:자회사와의 손해사정업무 위임계약 체결의 건	찬성	찬성	찬성	-
		제4호:지점 신설의 건	찬성	찬성	찬성	-
		제5호:준법감시인 선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
		제6호:집행임원 선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구성원	활동내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경영위원회	김정남 위원장 김선정 위원	2011.04.08	제1호 : 지배인 선/해임 및 변경의 건	가결
		2011.04.28	제1호 : 지점 이전의 건	가결
		2011.05.19	제1호 : 지점 이전의 건	가결
		2011.08.10	제1호 : 지점 이전의 건	가결
			제2호 : 지배인 선/해임의 건	가결
		2011.12.09	제1호 : 일중차월 기일 갱신의 건	가결
			제2호 : 지점 이전의 건	가결
		2012.03.09	제1호 : 일중차월 및 당좌차월 약정 갱신의 건	가결
제2호 : 지배인 선임의 건	가결			
사외이사 후보추천 위원회	엄홍렬 위원장 이근영 위원 김선정 위원	2011.05.19	제1호 :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	가결
감사위원회	이근영 위원장 김선정 위원 황희주 위원	2011.05.20	제1호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및 이사회 보고	가결
			제2호 :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평가보고서 이사회 제출	가결
			제3호 : FY2010 연간 감사실적 이사회 보고, FY2011 감사계획 보고	가결
			제4호 : 감사보고서 이사회 제출	가결
			제1호 : 재보험관리 규정 및 운영세칙 개정(안)	가결

위원회명	구성원	활동내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리스크관리위원회	김정남 위원장 이근영 위원 엄홍렬 위원	2011.04.18	제2호 : 재보험자 선택 및 평가 기준 개정(안)	가결
			제3호 : 재보험 중개사 선택 및 평가 기준 개정(안)	가결
			제4호 : FY 11 재보험운영전략(안)	가결
		2011.05.20	제1호 : 퇴직연금 심사기준금리 초과 적용에 대한 사전 심사	가결
			제1호 : FY 11 리스크관리전략(안)	가결
			제2호 : FY 11 파생금융거래전략(안)	가결
			제3호 : FY 11 위험(공시이율 등) 수준 결정(안)	가결
		2011.05.25	제4호 : 장기/연금보험 연동형 공시이율 산출기준 변경	가결
	<보고사항> (1) 리스크관리현황보고 (2) FY 10 자율규제 체크리스크결과 보고		-	
	김정남 위원장 이근영 위원 이수휴 위원	2011.06.29	제1호 :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가결
			제2호 : 보유한도 초과 계약(포스코) 사전 심사	가결
			제3호 : 퇴직연금 심사기준금리 초과 적용에 대한 사전 심사	가결
			제4호 : 퇴직연금 원리금보장형상품 리스크관리기준 개정(안) 승인	가결
		2011.08.10	<보고사항> (1) FY 11.6월 리스크관리현황보고 (2) FY 11 위기상황(Stress Test)분석 보고서 (3) FY 11 1/4분기 재보험운영전략모니터링 결과보고	-
2012.03.30			<보고사항> (1) FY 12.2월 리스크관리현황보고 (2) 퇴직연금 원리금보장형상품 리스크관리기준 개정 보고	-
보상위원회	김선정 위원장 김정남 위원 이수휴 위원	-	-	-

註) 이사회내 위원회의 구성원은 개최일 기준

<참고> :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구성원 현황 (2012.3.31 현재)

위원회명	구성원	비고
이사회	김정남(의장), 황희주(상근감사), 이근영(선임 사외이사), 김선정(사외이사), 이수휴(사외이사),	
경영위원회	김정남(위원장), 김선정	
리스크관리위원회	김정남(위원장), 이근영, 이수휴	
감사위원회	이근영(위원장), 김선정, 황희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이수휴(위원장), 이근영, 김선정	
보상위원회	김선정(위원장), 김정남, 이수휴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원)

구 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 고
사외이사	3	6,000,000,000	117,950,000	39,316,667	-

註) 주총승인금액은 사내이사를 포함한 전체 이사에 대한 총보수 승인금액이며,
지급총액은 2011.4.1 ~ 2012.3.31 기간동안 사외이사에 대해 지급한 금액임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종류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수익증권 매입	동부증권 (계열회사)	2011.07.14	2,000	1.6

2. 당해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당해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동부증권 (계열회사)	유가증권 거래 (주식,채권, 수익증권 등)	2011.04.01~ 2012.03.31	10,928	8.5

※ 상기 비율은 2011년 3월 31일 현재 자산총액(12조 8,713억)을 기준으로 산정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보험업은 사람의 생사에 관하여 약정한 급여의 제공을 약속하거나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의 보상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것 등을 업으로 행하는 것으로, 생명보험업, 손해보험업, 제3보험업으로 구분합니다.

손해보험은 다시 일반손해보험과 장기손해보험으로, 일반손해보험은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해상보험, 보증보험 등으로 구분합니다.

당사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손해보험업은 보험의 공공성으로 인해 감독당국의 엄격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으며, 가계성 보험상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주로 국내시장에 의존하는 내수산업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수익창출원인 자산운용부문의 성과와 수입보험료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장기보험의 수익이 금리와 주식시장 동향에 상당부분 영향을 받습니다.

보험산업은 경기흐름을 뒤따라가는 경기후행적 특성이 강하며, 보험영업 자체가 계절성을 가진다기 보다는 회사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손해율이 계절성을 갖는 경향이 있습니다.

2012년 3월말 현재 국내 손보시장에는 30여개의 국내외 보험사가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국내 손해보험사는 13개의 종합손해보험사(교보Axa, Ergo다음 포함)와 1개의 자동차보험 전업사, 1개의 재보험사, 1개의 보증보험 전업사가 있습니다.

FY'11년('11.4.1~'12.3.31) 손해보험업계는 원수보험료 55.7조원을 거수하여 전년동기대비 17.7%의 성장을 나타내었습니다. 보증별로는 장기보험이 전년동기대비 23.6% 성장한 37.8조원을 시현하여 고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일반보험이 4.9조원을 거수하여 전년동기대비 12.1%의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전년동기대비 13.0조원을 거수하여 5.1%의 성장률을 나타내었습니다.

보험종목별 비중을 보면, 일반보험 8.8%, 자동차보험 23.3%, 장기보험 67.9%로 장기보험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내 원수보험사 및 온라인손보사 13개사 기준 회사 자체 추정)

<참고> 최근 5년간 국내 손해보험업계 원수보험료

(단위:조원)

구분	FY'07	FY'08	FY'09	FY'10	FY'11(추정)
시장전체	31.5	34.8	40.3	47.4	55.7
(G/R)	15.4%	10.6%	16.0%	17.5%	17.7%

주) 13개 국내손해보험사 기준.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당사는 FY'11 사업년도에 9조 694억원의 원수보험료를 거수하여 전년대비 27.5% 성장하였습니다. 보험종목별로는 자동차보험이 2조 241억원으로 전년대비 12.5% 성장하였고, 일반보험은 7,403억원으로 전년대비 23.5% 성장하였습니다. 당사 원수보험료의 69.5%를 차지하고 있는 장기보험은 6조 3,050억원을 시현, 전년대비 33.7%의 높은 성장을 나타냈습니다. 보험영업이익은 전년대비 623억원이 증가한 △228원을 시현하였으며, 투자영업이익이 2,329억원 증가한 5,848억원을 시현하였습니다. 투자영업이익의 확대로 당기순이익은 전년대비 2,359억 증가한 4,032억원을 시현하였습니다. 2012년 3월말 현재 총자산은 17조 5,314억원으로 전년 3월말 대비 4조 339억원 증가하였으며, 비상위험준비금은 459억원이 증가한 4,997억원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2) 시장점유율

FY'11.2월말 기준 국내 주요 손해보험사의 보험종목별 시장점유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구분		자동차	장기	일반	합계
FY'11.2月	동부	15.5	16.7	15.1	16.3
	삼성	27.4	25.5	28.7	26.3
	현대	15.7	16.9	18.7	16.8
	LIG	12.6	14.4	18.9	14.3

註) 13개 국내손해보험사의 원수보험료 기준.

또한, 최근 3년간 국내 손해보험시장의 시장점유율 추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구분	FY' 11.2월	FY' 10	FY' 09
동부화재	16.3	15.0	14.8
삼성화재	26.3	27.0	27.0
현대해상	16.8	16.1	16.0
LIG손보	14.3	13.9	13.6
메리츠화재	7.7	8.1	8.2
한화손보	6.4	6.5	6.7
흥국화재	4.8	5.1	4.7
롯데손보	3.2	3.4	3.5
그린손보	1.5	1.8	2.0
약사다이렉트	1.0	1.2	1.4
현대하이카다이렉트	0.7	0.8	0.9
에르고다움다이렉트	0.5	0.6	0.6
더케이손보	0.6	0.6	0.6

(3) 시장의 특성

국내 (원수)손해보험시장은 상위 4개사가 원수보험 시장의 약 73.7%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로 자동차보험에 주력하는 4개 온라인사가 2.8%, 기타 5개사가 2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온라인 채널을 통한 판매가 활성화되어 전체 자동차보험 중 온라인시장의 비중이 25.1%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당사의 경우 FY'11년도 온라인 시장 점유율이 18.7%를 점해 온라인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온라인을 통한 자동차보험 가입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기보험은 FY'09.10월부터 시작된 실손보험 Co-payment 도입 영향으로 보장성 장기보험시장이 역성장하였으나, 저축성보험을 중심으로 초회보험료의 증가세 지속과 안정적 계속보험료 유입이 유지됨에 따라 장기보험의 고성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

현재 시장은 상위사 중심의 외형경쟁 가속화, 농협의 보험업 진출 및 부실보험사 인수시도 등에 따라 경쟁구도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GA채널의 대형화 및 영향력 증대, 업계 경쟁심화로 인한 사업모델의 고비용화 등 채널 경쟁도 격화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고객정보보호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수익성 기반의 외형성장 전략을 추진하면서 급변하는 시장 경쟁 상황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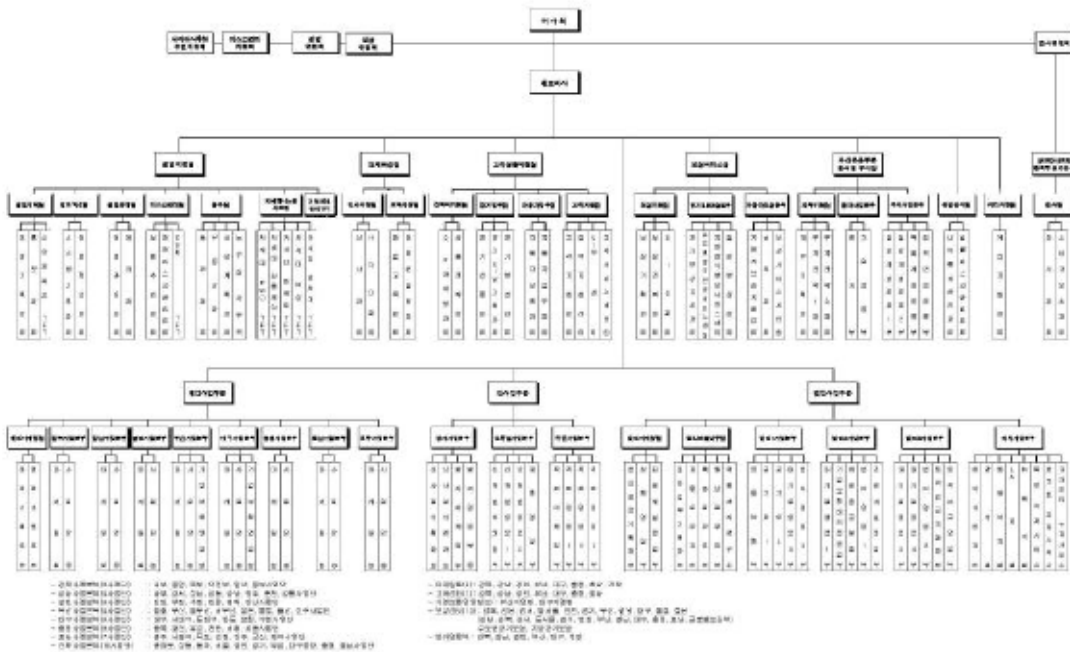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현재 추진중이거나 계획하는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5) 조직도

당사의 조직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풍류화재 조직도(2012.4.1)



조직도(2012.04.01)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 상기 'Ⅲ. 경영참고사항' 中 '1. 사업의 개요' 참조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대 차 대 조 표(재 무 상 태 표)>

제 45 기 2012.03.31 현재

제 44 기 2011.03.31 현재

(단위 : 원)

과 목	제 45기	제 44기
1. 현금및예치금	1,286,588,979,259	672,000,214,388
2.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248,276,207,253	362,213,088,972
3. 매도가능금융자산	7,458,236,481,342	5,706,411,742,639
4. 만기보유금융자산	595,182,870,981	321,322,122,289
5.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5,291,562,969	7,174,318,007
6. 대여금 및 수취채권	3,999,514,865,098	3,138,101,816,907
7. 종속 및 관계기업투자주식	210,971,782,871	170,071,342,871
8. 유형자산	311,607,472,148	289,370,123,885
9. 투자부동산	788,585,322,475	821,666,499,559
10. 무형자산	72,686,540,294	69,757,751,356
11. 재보험자산	365,307,427,984	323,382,515,323
12. 기타자산	1,610,411,095,014	1,355,210,167,015
13. 특별계정자산	578,701,525,750	260,765,120,111
자산총계	17,531,362,133,438	13,497,446,823,322
1. 책임준비금	13,921,759,021,836	10,661,410,430,611
2.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147,474,419	-

과 목	제 45기	제 44기
3.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	45,298,944,373	8,659,806,285
4. 퇴직급여부채	20,708,113,885	25,133,832,269
5. 기타부채	526,913,445,958	483,936,921,585
6. 이연법인세부채	186,213,763,738	143,177,616,116
7. 특별계정부채	625,638,576,059	274,407,184,990
부채총계	15,326,679,340,268	11,596,725,791,856
1. 자본금	35,400,000,000	35,400,000,000
2. 자본잉여금	37,912,781,518	37,912,781,518
3. 자본조정	(-) 29,655,475,800	(-) 29,655,475,800
4. 기타포괄손익누계액	279,576,487,427	321,805,581,482
5. 이익잉여금	1,881,449,000,025	1,535,258,144,266
자본총계	2,204,682,793,170	1,900,721,031,466

-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제 45 기 (2011.04.01 부터 2012.03.31 까지)

제 44 기 (2010.04.01 부터 2011.03.31 까지)

(단위 :원)

과 목	제 45기	제 44기
영업수익	10,514,803,349,537	8,237,184,703,210
영업비용	9,969,766,520,103	7,985,979,240,972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545,036,829,434	251,205,462,238
법인세비용	141,877,467,675	83,968,845,324
당기순이익	403,159,361,759	167,236,616,914
기타포괄손익	(-) 42,229,094,055	19,874,128,919
총포괄이익	360,930,267,704	187,110,745,833
주당순이익	6,369	2,642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결손금처리계산서>

제 45 기 (2011.04.01 부터 2012.03.31 까지)

제 44 기 (2010.04.01 부터 2011.03.31 까지)

(단위 : 원)

과 목	제 45기	제 44 기
I. 미처분이익잉여금	736,604,171,726	387,079,982,633
1. 전기이월이익잉여금	333,444,809,967	14,403,911,223
2. IFRS 전환효과	-	205,439,454,496
3. 당기순이익	403,159,361,759	167,236,616,914
II. 환입액	-	3,333,333,334
III. 이익잉여금처분액	702,858,109,988	56,968,506,000
1. 이익준비금	-	-
2. 배당금 * 보통주 1주당 배당금 - 당기 : 1,200원 - 전기 : 900원	75,958,008,000	56,968,506,000
3. 비상위험준비금	499,699,746,656	-
4. 대손준비금	27,200,355,332	-
5. 임의적립금	100,000,000,000	-
IV.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33,746,061,738	333,444,809,967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참조

- 연결대차대조표(연결 재무상태표)

<연 결 대 차 대 조 표(연 결 재 무 상 태 표)>

제 45 기 2012.03.31 현재

제 44 기 2011.03.31 현재

과 목	제 45기	제 44기
1. 현금및예치금	1,286,588,979,259	672,000,214,388
2.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248,276,207,253	362,213,088,972
3. 매도가능금융자산	7,458,236,481,342	5,706,411,742,639
4. 만기보유금융자산	595,182,870,981	321,322,122,289
5.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5,291,562,969	7,174,318,007
6. 대여금 및 수취채권	3,999,514,865,098	3,138,101,816,907
7. 종속 및 관계기업투자주식	210,971,782,871	170,071,342,871
8. 유형자산	311,607,472,148	289,370,123,885
9. 투자부동산	788,585,322,475	821,666,499,559
10. 무형자산	72,686,540,294	69,757,751,356
11. 재보험자산	365,307,427,984	323,382,515,323
12. 기타자산	1,610,411,095,014	1,355,210,167,015
13. 특별계정자산	578,701,525,750	260,765,120,111
자산총계	17,531,362,133,438	13,497,446,823,322
1. 책임준비금	13,921,759,021,836	10,661,410,430,611
2.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147,474,419	-
3.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	45,298,944,373	8,659,806,285
4. 퇴직급여부채	20,708,113,885	25,133,832,269
5. 기타부채	526,904,460,653	483,936,921,585
6. 이연법인세부채	186,213,763,738	143,177,616,116
7. 특별계정부채	625,638,576,059	274,407,184,990
부채총계	15,326,670,354,963	11,596,725,791,856
1. 자본금	35,400,000,000	35,400,000,000
2. 자본잉여금	37,912,781,518	37,912,781,518
3. 자본조정	(-) 29,655,475,800	(-) 29,655,475,800
4. 기타포괄손익누계액	279,576,487,427	321,805,581,482
5. 이익잉여금	1,881,457,985,330	1,535,258,144,266
자본총계	2,204,691,778,475	1,900,721,031,466

- 연결 손익계산서(연결 포괄손익계산서)

<연결 손익 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제 45 기 (2011.04.01 부터 2012.03.31 까지)

제 44기 (2010.04.01 부터 2011.03.31 까지)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및 그 종속기업

(단위 :원)

과 목	제 45기	제 44기
영업수익	10,639,005,828,409	8,350,463,063,892
영업비용	10,102,928,582,455	8,132,912,688,600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536,077,245,954	217,550,375,292
법인세비용	139,197,895,061	62,748,343,037
당기순이익	396,879,350,893	154,802,032,255
지배주주지분 당기순이익	396,879,350,893	154,802,032,255
비지배주주지분 당기순이익	-	-
기타포괄손익	5,384,030,839	62,488,174,470
총포괄이익	402,263,381,732	217,290,206,725
지배주주지분 총포괄순이익	402,263,381,732	217,290,206,725
비지배주주지분 총포괄순이익	-	-
지배주주 주당순이익	6,270	2,446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해당사항 없음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8조 (신주인수권)	제8조 (신주인수권)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①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신설)	①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④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신 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 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 고하여야 한다.	■개정상법 반영(제418조 제4 항) -제3자배정 유상증자시 통지 의무 반영
제31조 (이사회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로 한다. (단 서 신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 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 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 우 당해 이사는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생략)	제31조 (이사회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로 한다. 단, 상법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 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 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 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 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하는 것 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 사는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현행과 같음)	■개정상법 반영(제397조의2 및 제398조) -'회사의 사업기회 유용금지' 및 '이사 등과의 자기거래 제 한' 개정사항 결의에 대한 단 서조항 반영 ■개정상법 반영(제391조)
제35조 (집행임원회) ① 회사는 이사회 결정사항의 신속하 고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집행임원회 를 둘 수 있다. ② 집행임원회 위원은 이사회규정에 따라 상임이사 및 집행임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집행임원회의 구성, 권한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 로 정한다.	제35조 (경영임원회) ① 회사는 이사회 결정사항의 신속하 고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경영임원회 를 둘 수 있다. ② 경영임원회 위원은 이사회규정에 따라 상임이사 및 경영임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경영임원회의 구성, 권한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 로 정한다.	■개정상법 제408조의2~9에 신설된 '집행임원제도' 와의 혼돈을 피하기 위해 현행 정관의 '집행임원' 용어를 '경영임원' 으로 변경
제37조 (감사위원회의 직무) ①~② (생략) (신설) (신설)	제37조 (감사위원회의 직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 적사항과 소집사유를 서면으로 이사 회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 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③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	■개정상법 반영(제412조의4 및 제415조의2)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p>③~④ (생략) ⑤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4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p>	<p>회 소집권자가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⑥ (현행과 같음) ⑦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6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p>	
<p>제39조 (사업년도)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p>	<p>제39조 (사업년도)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p>	<p>■개정 보험업법 시행령 반영(제61조) -사업년도의 변경('13.4.1 시행)</p>
<p>제40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등) ①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다음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신설) ② (생략) ③ 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부분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④ (생략)</p>	<p>제40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등) ①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써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부분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⑤ (현행과 같음)</p>	<p>■개정상법 반영(제447조)</p>
<p>제41조2 (주식의 소각) ① 회사는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의 범위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하여야 한다.</p>	<p>제41조의2 (삭제)</p>	<p>■개정상법 반영(제341조 및 제343조) -자기주식 취득을 배당가능한도 내에서 원칙적 허용하고, 이사회 결의에 의해 자본감소를 제외한 주식소각을 자유롭게</p>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p>1. 소각할 주식의 종류와 총수 2. 소각하기 위하여 취득할 주식가액의 총액 3.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기간. 이 경우 그 기간은 이사회 결의 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주주총회일 이전이어야 한다.</p>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할 목적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p> <p>1. 자본시장통합법 제163조의3 또는 제2호의 제1항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할 것. 이 경우 자본시장통합법 제165조의 3 제3항 제1호의 방법에 의한 때에는 그 취득기간과 방법에 대하여 동법시행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p> <p>2. 소각을 위하여 취득할 금액이 당해 사업연도말 상법 제4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 자본시장통합법 시행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p> <p>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한 때에는 그 소각의 결의 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주주총회에 제2항 각호의 사항과 주식을 소각한 뜻을 보고하여야 한다.</p>		허용함에 따라 이를 반영
	<p>부 칙</p> <p>① 이 정관은 2012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p> <p>② 제39조는 2013년 4월 1일부터 적용되며, 2013사업연도는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p>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 · 생년월일 · 추천인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사외이사후보자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김정남	1952.10.26	사내이사	없음	이사회
이근영	1937.09.16	사외이사	없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김선정	1954.10.23	사외이사	없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이수휴	1937.09.12	사외이사	없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총 (4) 명				

※ 임기 만료에 따른 재선임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약력·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김정남	동부화재 대표이사 사장	- 동부화재 개인영업 총괄 상무 - 동부화재 경영지원 총괄 부사장 - 동부화재 신사업부문총괄 부사장	없음
이근영	법무법인 세종 고문	- 한국산업은행 총재 - 제3대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겸 금융감독원 원장	없음
김선정	동국대 법학과 교수	- 동국대 법대학장 겸 사회과학대학원장 -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법무부 사법시험위원	없음
이수휴	한국컴퓨터(주) 사외이사	- 제17대 은행감독원 원장 - 제4대 보험감독원 원장	없음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생년월일·추천인·최대주주와의 관계·사외이사후보자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이근영	1937.09.16	사외이사	없음	이사회
김선정	1954.10.23	사외이사	없음	이사회
총 (2) 명				

※ 임기 만료에 따른 재선임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약력·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이근영	법무법인 세종 고문	- 한국산업은행 총재 - 제3대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겸 금융감독원 원장	없음
김선정	동국대 법학과 교수	- 동국대 법대학장 겸 사회과학대학원장 -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법무부 사법시험위원	없음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구 분	전 기	당 기
이사의 수(사외이사수)	5 (3)	5 (3)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60억원	60억원

※ 전기와 동일